

제403회 국회
(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15일(수)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6)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8)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7)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5)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5)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68)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6)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6)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5)
12.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유취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6)
13.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14.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15.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0)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8)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4)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9)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2)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32)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6)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8)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6)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2)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5)
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3)

상정된 안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2)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6) 2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8)	2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	2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7)	2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5)	2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5)	2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68)	2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6)	2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6)	3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5)	3
12.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유취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6)	3
13.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3
14.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3
15.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3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0)	3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8)	3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4)	3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9)	3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2)	3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32)	3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6)	3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8)	3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6)	3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2)	3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5)	3
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3)	3

(14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6)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8)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3)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7)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5)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5)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68)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6)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6)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5)

12.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유취안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6)

13.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14.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15.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400)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628)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064)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199)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222)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32)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366)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18)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6)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0482)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5)

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3)

(14시04분)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

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항부터 12항까지 동일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청회 1회 그다음에 소위 3회 그리고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축조심사, 소위 자료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설명 및 정부 측의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겠지요?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아니, 정부 측 의견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 측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 왔던 대로 하세요, 그냥.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정부 측 관련해서 전문위원,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할 사안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원모 추가적으로 설명할 사안은 없고 항목별로 하시면, 예를 들어……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각 항목별로 모두 논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위 심사 필요 없이……

○전문위원 김원모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소위 자료에 지난 논의사항들이 다 항목별로 정리가 돼 있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러면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소위를 통해서 누차 말씀은 드렸긴 하지만 노조법 2조 관련해서 개정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 문제나 노사관계 혼란 그리고 사실은 한 조항, 한 조항이 다 노조법에서는 강행규정과 형사처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3조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결과적

으로, 이거는 민법이나 신원보증법이나 관련 법에서 그 논의를 해야지 노조법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일관성 문제나 여러 가지 법체계상 문제에 상당히 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을 다른 법에서 예외를 규정한다고 할 때도 저희가 사실은 그걸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반대의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노조법 2조·3조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은 전문위원이 이 소위 자료에 다 정리해서 의견을 올려 났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각 조항, 조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소위원장이 제안하고 그에 따라서 조항에 대한 결정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우리 환노위에서 노동법안소위를 오늘까지 하면 네 차례 연달아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사회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상당 시간 여당에서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또 참여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이 법안이 소위에서 다뤄져서 의결이 돼서 전체회의에 가야 된다. 다른 상임위는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노동법안소위는 그동안 몇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정말 여간 죄송스럽지 않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 온 만큼 또 갈등이 있는 그런 법이니만큼 여야가 다 토론회도 하고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좀 내려 주십사 소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들 다 하시고 또 저희가 잘 경청할 부분은 경청하고.

그렇지만 또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손배·가압류 폭탄에 그리고 도대체 누가

사용자인지 알 수 없는, 교섭을 누구와 해야 될지 그리고 노동조건과 모든 조합원들의 처우, 노동자들의 처우와 환경들을 다 결정하는 게 원청사업주가 분명하고, 우리 사회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서 기타 많은 노조들이 교섭을 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미 진짜 사용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드러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입법부가 가장 늦게 모든 결정들을 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어려운 일인 줄은 잘 압니다만 오늘날만큼 분명히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면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을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매번 회의에 오래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몇 번씩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먼저 와서 검토한 위원들은 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소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도 한두 분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지금 11월에 법안 공청회를 시작하고 세 번의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검토의견 다, 각각 참여한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소위에 진짜 충실히 참여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습니다. 지금도 한참 늦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 포함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은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노조법 2조를, 2조 2항 사용자 개념 정의를 제대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의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의 평화가 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입법자가 그걸 못 쫓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된다, 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들 몇 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셨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원모 열한 분 발의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 열한 분이지요? 그러면 열한 분이 내신 부분이 정리가 됐나요, 오늘 안으로 어떻게 한다 정리가 됐어요?

○전문위원 김원모 회의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 정리가 됐다고요. 정리가 안 됐는데 왜 전문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리가 됐으면 모를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당에서 다 모두발언 성격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국가경쟁력을,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걱정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노동만 있어 가지고 노동만 갖고 먹고사는 나라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는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올라가고 또 일자리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만드는 게 일자리인데……

여기서 노동존중, 좋습니다. 노동존중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지금 노동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공화국을 만들어 놓으면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이 노조법을 만들어 봤을 경우에 누가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할 것이며, 있는 기업들도 다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 고스란히 고통이 따르는 데는 취약계층 노동자일 뿐입니다. 공기업·대기업·공무원노조, 전교조 이런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대부분이 국민세금 갖고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큰 고통이 안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는 건 취약계층 노동자임을 명심하시고……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실질적 지배설도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실 묵시적 계약관계로 가는 형

국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용자 개념을 그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 지배설을 만약에 받아들였을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수진(비) 위원 법안 내시지요.

○임이자 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걸 무작정하자는 게 법률 미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수진(비) 위원 지금 괜찮아요. 가능해요.

○임이자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이수진(비) 위원 물어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임이자 위원 아니,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함을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고요.

법안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도 그래도 한 말씀씩 다 하셔야 되니까, 되게 중요한 사안이어서 각자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전용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저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조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정을 한번 배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법안을 수정할 것인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것 동의하고, 그러나 노조공화국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조가 굉장히 약한 곳이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너무 세지요.

○전용기 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약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조공화국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사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다른 해외

자본들을 투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70년대, 80년대 얘기 같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사실……

○임이자 위원 외국 자본 안 들어와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전용기 위원 아니요,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노동력만을 제공해서 우리가 자본을 유치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옛날 얘기 같아서 이제는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조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제공돼야 되고. 예전에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있었던 일처럼 과도하게 손배 폭탄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될 때가 왔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을 일단 제안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모두발언 다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 각자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박대수 위원님 그다음에 윤건영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저는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100%, 2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들끼리 논쟁하고 이견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조금 전에, 장 위원님한테 내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공화국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님께서…… 저도 노조공화국, 대한민국 노동조합 세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장 위원님은……

아니, 아니……

○소위원장 김영진 전용기 위원입니다.

○박대수 위원 전 위원님, 진짜 죄송합니다. 장철민 위원을 내가…… 미안합니다.

노동조합을 그래도 여기 이수진 위원도 하였고 나도 해 봤고 김 위원도 이 위원도 해 왔는데 현장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내부도 치유를 못 하면서 남북통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면 복수노조 있지요, 복수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갈려 가지고 보기를 꺼려요. 밥도,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분열

이 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다 또 이 법안도 보니까 그럴 소지가 엄청나요.

그리고 또 하나, 법률가들만 변호사들만 아파때돈 벌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많아,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다. 혼란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나는 교섭을 한 30년 함께 한 사람이에요, 직접 현장에서. 그래서 교섭을 안 해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걸으러 듣고 언론, 보고서 이런 데 통해서 노동조합이 어떻고 어떻다? 난 동의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실제 교섭을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중구조 개선,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구조 개선은 이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찾아서 우리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국회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자 약자, 약자 약자? 물론 같이 동행해야지요. 하는데 약자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약자인지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해서 저임금받는 사람이 약자인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봐야 되고.

이 법률로 갔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관련해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윤건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모두발언 비슷하게 가서 그 형식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법안의, 노조법 2·3조를 다루게 된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환노위 온 지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 처음부터 의논했던 게 불합리한 손배소를 어떻게든 환노위가 개선해 보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가 사라지고 양쪽 진영의 대결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아쉬움이……

○임이자 위원 아니, 우리 당은 아니었고 민주당만의…… 우리가 다 같이 하자고 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만의 생각이고, 정의당하고.

○윤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쪽 진영의 갈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손배소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약탈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대 자본이 돈으로 겁박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자라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를 따박따박 지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늦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18년 전인가 주 40시간 도입할 때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만 일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겠나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은 그 위기를 잘 돌파해 왔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우려는 다 알고 있으나 진정한 노동의 경쟁력, 사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부처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부터 해서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대안이 뭐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노동부라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지껏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절충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김형동 위원님, 모두 발언이니깐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형동 위원 발언하기 전에 질문 좀……

단일안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단일안을 소위원장이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은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형동 위원 그럼 얘기할 게 없네요.

○소위원장 김영진 안 할 거예요?

○김형동 위원 그런데 노조법 조문이 몇 조는 안 되지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

런 거지요. 이게 사람의 몸통, 머리, 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라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노조법 내에서의 정합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구 단일화제도나 그다음에 사용자 개념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따라서 교섭의 상대방이 누구냐, 법률 안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지요. 근기법이든 노조법이든 어쨌든 사용자는 월급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월급을 안 주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느냐?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 것은, CJ 판례도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으로 81조에 대한 처벌을 할 때 나온 판례지 너보고 월급 주라고 얘기한 예는 없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시다라는 노조법 안에서 다양한 제도를 함께 검토하지 않고서 이 법만 가지고 고쳤을 때 굉장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쪽이 한쪽을 먹거나 물리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헌법적 단계로 가면 재산권 부분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법률 내에서의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다른 제도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2조·3조를, 수준은 낮겠지만, 위원장님이 제안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나 고려 없이 하기에는 어렵다, 이것은 현장의 혼란과 비용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변호사, 노무사님 계실 수도 있는데 법률시장, 다시 말해서 노동문제가 사법화되는 데 국회가 일조를 하게 된다. 노사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 줘야 되는데 해석의 문제부터 충돌의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정길채 노무사님 같은 분들의 일감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것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노사 균형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권을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보느냐는 국가체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적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충돌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예전에 권오성 교수가 이런 발제를 했었습니다. ‘사용자라는 말 말고

다른 걸 대체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말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얘기가 없다’. 워커, 레이버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정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실상의 종속적인 관계 이런 쪽으로 얘기했을 때 오히려 사용자의 개념을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노조법이 새로 만들어진 이후로 따지더라도 거의 한 30년 동안 논의됐던 얘기인데, 물론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가을부터 했기 때문에 긴 시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짧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숙제였고 한 30년 동안 묵어 왔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께서 약탈적인 손배 청구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노조법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집행이나 민사소송법 이쪽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텅렸을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저도 위원장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차례의 논의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검토보고서에 했는데요, 5페이지 10번에도 보면 얘기하잖아요.

김영진 위원, 제가 했던 발언이잖아요. 권리분쟁 관련 판결내용 정리 보고, 한 번도 없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차에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보호 확대 연혁 정리 보고 그다음에 전차 5번에 해외 주요국가에서의 관행에 대한 조사.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자체가 말로는 안 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용자의 이중구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먼

저 개혁해서 이중구조 해결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GDP의 20%입니다. 50대 그룹이 대한민국 GDP의 70%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력 차이와 경제력의 이중구조가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끼리 니네끼리 싸워서 나눠 가져라 이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의 첫 출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용자와 자본의 이중구조를 해결해 나가면서 수익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데 어떻게 노동시장의,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동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저는 그게 2023년에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3년의 위기 속에서 경제 양극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이중구조는 몇 배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것에 따라서 후순위위가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후순위를 통해서 전체 구조를 변경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의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자들과 노사 간의 관계를 정상적이고 평형적인, 최소한 해서 균형 잡힌 형태로 하는 것이 노조법 2·3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 논의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합성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노조법이 하나의 전체적인 틀이니까? 창구 단일화 문제도 전차 전체회의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하청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그것을 벗어난 형태로 임금을, 저는 하지 않는다고 봐요. 적용을 해 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해서 국회가 정확하게 어떠한 몇 조 몇 조, 81조, 창구 단일화 이것을 하면 되는 거지요, 과제로. 그리고 이 과정의 역할이 저는 국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자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낼 때라고 해서 의견, 이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의 제안 안이고 이것을 가지고 조항별로 간단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일방적으로 민주당 안을 내시면……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소위원장의 의견이 예요, 제안. 논의를 해 주시면 되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대립적 노사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추겨 가면 대한민국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김형동 위원 미리 주셨으면 공부 좀 했을 텐데, 이것 2장밖에 안 되는 것을 왜……

○소위원장 김영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공부할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그동안 논의했던 바에 따라서 그냥 간략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조 2항 사용자 개념에서 후단 신설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이 개정안이고요.

2조 5항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을 빼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조정해 준 겁니다. 이 내용은 1996년 노조법 개정 당시의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96년의 속기록이나 모든 것을 찾아봐도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는 변경의 사유가 불분명했고 그로부터 파생했던 여러 가지 이익분쟁, 권리분쟁이 실제로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지만 그것 포함해서 다 후속조치로 단체협약이라든지 제반의 부분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근로조건으로, 1996년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 3조에 있어서 3조 2항 신설해서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해야 된다는 조항이고요.

3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봉건적인 형태의 신원보증법이 가지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4개 조항만 정리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을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 민주당은 다 찬성한다는 얘긴가요?

○이수진(비) 위원 예.

○임이자 위원 정의당 찬성하시나요, 이 안에?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의견 주세요.

○이은주 위원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은주 위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안, 사실 그동안 토론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용자 정의에 관련해서 지배력설 수용해야 하고 또 쟁의행위에 대한 정의에 권리분쟁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안을 대안으로 내 주셨습니다.

실제 2010년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판결 이래 우리 법원은 꾸준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지배·종속관계를 넘어서 지배력 행사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판례를 계속 형성해 왔어요. 이것은 또 비단 법원 판결 문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2조 2항의 개정 문제가 노조법 개정의 핵심이다, 엄청나게 많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업 자체가 예전처럼 일대일 근로계약 관계로 사용자·근로자가 다 정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도 여기서 파생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경영상의 목적으로 외주와 계열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근본적으로 제약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위원장께서 대안으로 제출해 주신 2조 개정안은 상당히 진전된 안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 기본권을 향유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안이라고 보고요.

또 저는 정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

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극복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있고요,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극복해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율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서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그 것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계속해 온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제 이 법이 제대로 개정이 되면 법 집행을 위해서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애 많이 쓰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애초 대우조선해양 470억 손배소, 남발되는 이런 손배소를 막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안 그리고 계속 설명드렸던 것, 영국에는 입법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또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는 상한선을 두는 이 법을 많이 말씀드리고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대안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또 쟁의도 할 수 있어서 당연히 불법적인, 법에서 벗어난 쟁의행위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여러 의원님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과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금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3조에 반영되지 못해서 앞으로 노조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소송 남발을 제어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리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환노위가 더 노력하자 이런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 찬성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은주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이수

진 위원님 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정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너무 짧게 드렸지요, 원했던 것보다? 조항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임이자 위원 제안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합의해서 하려고 짧게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 수 없 고요.

일단 사용자 개념 확대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도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제가 누차 술하게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근로계약의 형해화를 초래하게 되고 법과 사회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고 또 지배력, 영향력, 불명확한 이 개념을……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데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시장에서 변호사, 노무사들만 먹고살게 해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교섭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교섭 대상이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는 좀 들으세요,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배웠습니다.

○임이자 위원 누구한테?

○이수진(비) 위원 위원님한테.

○임이자 위원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수진(비) 위원 전반기 2년 동안 하시는 것 봤습니다.

○임이자 위원 하여튼 교섭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용기 위원님, 제 얘기를 좀 한번 들어 봐요.

완성차의 경우에 모든 협력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거나, 완성차 같은 경우에—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모든 협력업체가 다 교섭을 요구해 오고 또 파업이 가능했을 경우에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데 대해서 고민 한번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교섭창구 단일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원체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이 법 했다가 안 되면, 헌법소원 해 갖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입법기관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수진(비) 위원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전체회의 때.

○소위원장 김영진 토론하지는 마시고 의견 주세요.

○임이자 위원 그리고 단체교섭 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파업할 때 찬반투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파업했을 때 대체근로 제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 또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진성도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부분들을 한번씩 다 토론을 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안 그러고 2조만 달랑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혼란을 초래한다.

아까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잖아요. 이게 다 유기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달랑 고쳐 갖고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쟁의 대상 확대와 관련되어 갖고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해고자 복직 등 이런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연중 파업이 가능하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제안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이렇게 해 봐도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을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갖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법을 우리가 만들 때는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고 그 법을 갖다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추측만 해 가지고 만들 수는 없다.

그다음에 불법쟁의행위 시에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들어 왔지요, 이번에?

○소위원장 김영진 원래 있었던, 논의했던 안입니다.

○임이자 위원 논의했었습니까, 이게?

○소위원장 김영진 예, 깊게 논의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깊게 논의했습니까?

그러면 문제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면제하자는 얘가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또 반대를 하느냐 하면 현재 출입방해라든가 사업장 점거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이제 하나의 손해 발생 시에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해서 배상책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대의 의미가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민법 제760조 연대책임 원칙을 갖다 형해화한다는 거예요. 법체계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지, 이게.

법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민법 제760조 불법행위 공동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액을 개별 불법행위로 구분해 갖고 산정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불법행위가 일어났는데 개별적으로 누가 어디까지 이만큼 했다고 이게 불가능하다. 이랬을 경우에 또 재산권이라든가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원보증 책임 면제 관련되어 가지고도 여러분들 다른 법과 이렇게 다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전문위원님, 노조원 불법행위에 대한 신원보증인 책임 면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원모 여러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었고 재산권 침해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법사위에 신원보증법이 있으니 그쪽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신원보증법 일반원칙이 됩니까? 신원보증법 일반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일반원칙에 반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피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신원보증법의 일반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신원보증인제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의 어떤 체계를 자체를 뒤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면서 타 법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렇게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일반 국민들보다 더 특별히 대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김형동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오랜 시간 공들여서 논의를 했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3조와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게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현장조사를 몇 가지 해 왔습니다.

일단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결정 또 조정절차 이런 교섭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현장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간접고용사업장에서 교섭이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청과의 교섭이 불필요하지요, 첫 번째.

그리고 오히려 원청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청이 교섭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보통 원청과 하청업체 사장단 대표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도 해왔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원청과 교섭사항에 포함되지조차 않습니다.

그 외에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원하청 공동교섭으로 진행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합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단이 같이 교섭에 참여하고 노조측에서는 비정규직노조가 단독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정규직노조가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노조 간 창구 단일화 문제로 분쟁이 생긴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섭 참여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진행된 것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노동조건을 분리해서 교섭하며 이런 맥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교섭창구가 분리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산별체계에서는 하청업체마다 독자 노조가 설립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사업장 단위로 비정규직지회가 결성이 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 간의 창구 단일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같이 존재하거나 같은 노조라고 하더라도 산별연맹이 다른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청과 교섭이 된 사안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경영에 대한 개입, 간섭을 문제 삼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청이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청의 권한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원청 없이 하청업체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고 중간마진이 늘어나서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경영 개입, 간섭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진성도급의 경우 원청이 사용자가 아닙니다. 교섭에서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진성도급에서 원청을 상대로 해서 교섭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업장들은 모두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불응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업장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장의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여로부터 그렇게 목 놓아서 외쳤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교섭 사례도 여기 다 있는데 이것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노동부한테 좀 물어볼게요.

차관님, 쿠팡이츠, 카카오모빌리티 그리고 어디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어쨌든 손해보험사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CJ대한통운 택배, 한국 GM, 하이트진로, 여기가 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교섭을 하고 또 교섭을 체결해서 단체협약을 맺고 그랬던 사업장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고 하기 싫으면 별별 핑계가 다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은 환노위에서 다룰 필요도 없지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그냥 실적 쌓기 그 정도의 일만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원하청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섭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미비된 것을 저희가 이번 2·3조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급계약을 형해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원청이랑 교섭하면 하청은 무엇이나 이런 얘기하시는데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이 형해화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원청에 지배력과 결정권이 있는 사항은 원청을 상대로……

○임이자 위원 근로계약이 형해화되지 도급계약이 왜 형해화돼?

○이수진(비) 위원 임이자 위원님,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들어 달라면서요. 제가 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시니까.

○임이자 위원 내가 지금 혼잣말했어요.

아니, 근로계약이 형해화되지 어떻게 도급계약이 형해화되느냐고.

○이수진(비) 위원 제 귀에 들립니다.

원청, 하청은 자신이 지배력과 결정권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결정권자를 오인하는 경우 원하청 사용자가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알려 주고 그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할 것을 안내하면 됩니다. 각자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각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지배력, 결정권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이 진행된 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주체가 단체협약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체결을 했으니까요. 권한 분배에 대해서 혼란을 줄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해 놓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저 역시 현장에서, 저도 30년 가까이 병원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고 단체교섭을 13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부딪히는 벽이 있고. 저는 사실은 파업도 해 봤지요. 2

년 동안 민형사사건도 다 다녀왔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에 가서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뭘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사용자들이 애는 단순가담법, 애는 중범, 아주 다 알아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민형사상 손배책임 물을 때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사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처벌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아이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 다 알아서들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더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 못 하게 내지는 파업 못 하게 아니면 조합원 숫자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탄압하고 압박하고, 사람인지라 그것에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고 노조가 파괴가 돼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뻔히 아시면서 다른 방법 있으니까 참고 노조법 2·3조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고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은 왜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같이 논의했어야지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저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을 한다면 노동조합이 교섭 의제로 제시한 사항을 수용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갈등이나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게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 국회 환노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저는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단일안을 일단 만드신 것 자체는 고생하셨다,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10여 개 안 가지고 도대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좀 전에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쌍용차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조법 3조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면 지금 노조법 3조 2항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무지막지하게, 법원에서 연대책임을 때리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판례 법리를 국회가 받아들였다라고, 아까 사유재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것하고 정리를 하면 이 정도로 가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저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우리는 단결권이 있고 단체교섭권이 있고 이후에 파업·쟁의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2조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삼성이 우리 경제의 20~25% 그다음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게 한 70% 넘는다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교섭을 무조건 삼성보고 하자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 돈 안 듭니다. 그리고 중노위나 지노위 가는 것은 아예, 인지도 안 들어가기니까 무조건 교섭을 요구하고 그쪽에서는 내가 사용자가 아니다 하면 이 문구를 집어 넣어 가지고 중노위, 대법원까지 가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분리돼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사용자 판단을 받았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용자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거액으로 소송을 하는 건 상대방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조·3조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삼성계열사, 현대계열사, 정몽구나 이재용이나 요구를 합니다. 이게 공격 방법이에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하나의 상정을 해 본 거고요.

나머지, 판결문을 죽 읽어 보면 판결문에 나온 이 용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다면 81조에다가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이 앞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노조법 조문이 노동조합 상대방인 사용자하고 노동조합 간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의무관계를?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지금 이 문구가 나온 것은 부노에 대한 처벌을 할 때 나온 규정이지 나머지 제 규정을 다 아우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 넣어 놓으면 노조법 1조부터 저 뒤의 처벌 조항, 부칙까지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만 예전에 30년 동안 교섭을 해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했다는 얘기예요. 모순이 되는 겁니다. 굳이 법 개정을 안 해도 해 봤다는 거예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지요, 하청이 아니었는데.

○김형동 위원 들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차라리 지금 산별노조로 운영이 되면 초기업단위이기 때문에 원청이 됐든 원청 할배가 됐든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이나 윤건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산별노조에 대한 강제의무를 집어넣으면 더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조문은 2조(정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조법 전체를 관통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부노에 있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현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삼성계열사입니까? 무조건 이재용한테 걸어 놓고 시작하세요’…… 지노위, 중노위는 돈도 안 듭니다. 1장 적으면 돼요. 그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것 법원에 가서 판단받으면 돼……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맡겨 뒀다 될 것을 자꾸 법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구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의 규정에 들어가면 노조법 전체가 다 이 문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정합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제 의견뿐만 아니라 꽤 노동법을 하시는 학자님들께서 다 평석을 내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의견이 있으셨어요.

○김형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여기 노동조건의 결정으로 해 놓은 것을 왜 근로조건이라고 바꿨습니까? 하다못해 노동조건이라고 적든지……

○임이자 위원 아니지, 근로조건의 결정이지. 이게 지금 권리적 분쟁까지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야.

○소위원장 김영진 원래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돼 있어요. 근로조건입니다.

○김형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진지하게 좀, 이것 하면 끝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저는 지난해입니다, 언론중재법이든 몇 개의 법률안이,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물론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월세가 늘어났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언론중재법은 그렇게 새벽까지 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어디 갔는지 지금 없어요. 그런 우를 환노위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문은 정의 규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전용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법의 해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법을 미룰 수는 없는 일 같아 가지고요.

○김형동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용을 하려면 법이 똑바로 돼야지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약자를 위한 정책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변호사, 노무사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 피하려고 대기업들에서는 어떻게든 꿈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 중요한 기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재하청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꿈수에 꿈수로 변질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동권을 보장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해당 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게 된 것도 가장 크게 대우조선해양 사건이고 국정감사였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님 나오셔서 하는 얘기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하청노동자 월급명세서 들이대니까 나는 이것 처음 봤다라고 하고 있고 하청과 교섭할 거냐니까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꼬리 자르기를 할 텐데 그때 노동자는 어떠한 방어권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 손배 폭탄 막아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정부를 못 믿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와 노동자와 같이 대화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탄압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 둘 수가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 하청이 교섭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문 하나 하나 보면 2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기인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삼성, 현대, 사실 제조업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공정을 거치는 이런 곳에는, 결국에는 중간 완제품 납부나 마지막 공정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하청이 교섭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충분히 넓은 범위로 법을 적용을 해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나 결정을 하려면 마지막 공정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20년 일해도 200만 원 주는 그 월급명세를 받고 있고요.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원청인 발전 5사에서 노무비 6100만 원 책정했는데 용역 통하니까 2800만~3000만 원 받았다고 한국일보 기자인가 몇 년을 추적해 가지고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도 고쳐야 되고 그 사람들도 노동권을 보장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원보증법 말씀하시는데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산권 인정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재산권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고 자원에 맡겨야 되는데 이 정도로 신원보증법에서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 줄 수 있어야 무분별한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다, 그걸 제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신·구조문대비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저는 동의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 발언하셨지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임이자 위원 손배 폭탄이 손배는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책임, 자기 책임.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 나눠 드린 안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결하면 안 된다니까
요. 지금 이제 대안을 내놔으니까 또 논의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왜 그러세요, 진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소위원장 김영진 그동안 충분히 하셨잖아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은
것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지 이걸 지금……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회의 가서 더 논의하시
지요.

○임이자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안 돼요. 더 논
의하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가 공
청회 및……

○임이자 위원 안 된다니까!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얘기해 봐야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2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
도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교섭도 야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수진(비)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김영진 당연하지요.

○이수진(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하고 있고 문제가 안 돼요.

○소위원장 김영진 CJ대한통운의 판례가 서울
행정법원에서의 판례였지 않습니까.

○김형동 위원 그것은 극단적인 예라니까요.

○이은주 위원 그게 어떻게 극단적인 예입니까.

○임이자 위원 그것은 1심이지요, 1심.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까지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수진(비) 위원 단체교섭 안 한 게 부당노동
행위라는 뜻이에요. 단체교섭하라는 얘기예요.

○임이자 위원 아니, 회사가 그걸 수용해 가지
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이수진(비) 위원 안 하잖아요.

○임이자 위원 지금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
냐 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성을 다 고려해
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김형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교섭을 하면 분쟁이 안 생기
지요. 교섭을 안 하니까 분쟁이 생겼잖아요.

○이은주 위원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정리하면 이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제한적
으로, 노조법이 지금 몇 개 있냐 하면……

오늘 의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먼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위원장님께
서 이것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
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예.

○김형동 위원 오늘 안 하면 끝나요?

○이은주 위원 아니, 여태껏 지금 뭘 했습니까,
우리가?

○김형동 위원 들어 보세요.

밤새도록 공부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것 하고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점수 나오니까? 안 나오
지요.

○이은주 위원 안 나오셨잖아요, 퇴장하셨고.

○김형동 위원 들어 보십시오.

○임이자 위원 퇴장하게 만들었잖아요.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은……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하게 그 우려와 내용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김형동 위원 한 70개 조문이 있는데 노조법에
예를 들면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요구받고 창구
단일화를 해 오십시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디테일한 거지만.

○임이자 위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그때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무슨 법을 그렇게 말
씀하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 법안을 개정하세요. 개정

안을 내면 되잖아요.

○김형동 위원 제가 여쭙 봤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소위원장 김영진 그 개정안을 개정하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법을 만드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그 개정을 하세요, 그러면. 김형동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면 되잖아요.

○이수진(비) 위원 제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원청이든 하청이든 노조들이 산별이든 다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행법에도 방법이 있어요.

○임이자 위원 법에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보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노조법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 바대로……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하게 해 주세요. 발언권을……

○소위원장 김영진 발언을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김형동 위원 10초면 돼요.

○소위원장 김영진 10초 하세요.

○김형동 위원 다른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기록에 남습니까, 이게?

○임이자 위원 기록에 남지요. 남아요.

○이수진(비) 위원 다 남지요.

○김형동 위원 이 법 다 개정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영진 다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위원장님, 저희 정부의 입장을……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됐습니다.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얼마나 급하면 부칙도 없어, 부칙도.

○소위원장 김영진 부칙 나눠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부칙도 안 만들어 와 가지고 법안 통과한다고 말이야.

○이수진(비) 위원 부칙 있잖아요. 보세요, 부칙 나눠 드렸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부칙 나눠 주세요.

○임이자 위원 이것 안 됩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이것 책임져야 돼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사일정……

○이수진(비) 위원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안지는 책임을 왜 우리보고 지라고 그래요?

○임이자 위원 어차피 안 될 것 알고 막 여러분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데……

○이수진(비) 위원 어차피 안 될 게 아니지요. 몇 달 동안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안 됐지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예요.

○임이자 위원 대한민국을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이수진(비) 위원 대한민국 생각해서 여러분들 회의 안 나올 때 저희 열심히 회의했습니다, 몇 시간씩.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이제 충분히 논의했고요, 저희들도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의사를 충분히 주셨어요. 우려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노동조합 및……

○임이자 위원 저희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임이자 위원 이것은 폭거예요, 폭거. 민주당 폭거!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이걸 폭거입니다, 폭거!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 아니, 갑자기 대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밀어놓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명확하게 표결하기 위해서 지금 소위원장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임이자 위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찬성 다섯 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세 분.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국회법 제57조의2제1
항에 따라 아래 안전에 대해서 안전조정을 요구
합니다. 지금 방금 아주 그냥 졸속으로 가져오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조정을 요구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다 준비해 오셨네요, 도장까
지 찍어 가지고.

○소위원장 김영진 조정은 국회법 절차니까요
진행하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
은 동 청원의 취지가……

○임이자 위원 저희는 안전조정을 신청하고 퇴
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방금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반영되
었으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동 청
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분 찬성, 반대 세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7항까지는 우
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정 들어왔어요, 신청서?

○이수진(비) 위원 신청서 안 주면 무효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신청서 국회에 제출하셨습니
까? 안전조정위원회 신청하셨냐고요.

○이수진(비) 위원 상임위원장한테 제출해요.

○소위원장 김영진 상임위원장한테 제출하셨어요?

○이수진(비) 위원 지금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
하셨어요?

○임이자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낼 거예요.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안전조정위원회가 제
출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대로 또 안전조정위
원회의 구성 및 방향대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상 여기까지 하고 산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정부 측,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영 진 김 형 동 박 대 수 윤 건 영
이수진(비) 이 은 주 임 이 자 전 용 기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원 모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	관	권	기	섭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종	필	
노	동	정	책	실
장	이	정	한	
통	합	고	용	정
책	하	형	소	
국	양	정	열	
장	정	경	훈	
임	금	근	로	시
간	이	민	재	
단	권	창	준	
장	김	유	진	
노	동	시	장	정
책	최	태	호	
관	이	현	옥	
고				
용				
정				
책				
관				
청				
년				
고				
용				
정				
책				
관				